

학교법인 성지학원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직이사	8인	2인
참석이사	7인	0인

1. 회의일시: 2020년 8월 25일(화) 14:00~15:50 (소집통지일: 2020년 8월 14일)

2. 회의장소: 부산외대 회의실(본관 F603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7인 (이사장 직무대행 이복수
이사 정길수, 오지섭, 윤효선, 윤수길, 김요한, 정연승)
- 불참임원: 3인 (이사장 정해린, 감사 안창엽, 정혁주)
- 배석인원: 사무국장 서정학,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 문상호

4. 안건

- 제1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제4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2025+(안)
- 제5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
- 제6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
- 제7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제8호 의안: 법인 정관 개정(안)
- 기타: 간서명 이사 선임

5. 개회선언

14시 정각에 사무국장이 정해린 이사장께서 사고로 인하여 오늘 제3차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해 이복수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여 이사회 주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하는 절차와 이사장의 위임장을 출석 이사에게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이에 정길수 이사는 정관에 의한 절차이므로 직무대행 지명에 대하여 동의하고, 윤효선 이사의 재청과 함께 이복수 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며 이복수 이사께 이사회 주재를 요청하다.

<간서명>	이복수	정연승
-------	-----	-----

14시 10분에 이복수 직무대행께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길수 이사의 기도인도 후 회의가 시작되다>

6.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문상호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문상호 기획처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2) 문상호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임용절차를 거쳐 상정된 전임교원 임용(신규임용, 승진, 정년보장, 재임용, 면직)안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17명 신규임용(임용 계약기간 : 2020.09.01. ~ 2022.08.31.), 2명 임용포기

연번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비고
1	전임교원B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교육중점전임교원					임용포기
14	산학협력중점교원					
15	"					
16	"					
17	"					
18	외국인전임교원					
19	"					임용포기

<간서명>

이 복수

- 2 -

스카이

정 연승

▶ 아래 1명 신규임용(임용 계약기간 : 2020.09.05. ~ 2022.08.31.)

연번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비고
1	전임교원B					

▶ 아래 7명 승진(임용일: 2020.09.01.), 1명 승진탈락, 3명 승진심사 포기

연번	직종	성명	소속	현직위 임용일	현직위	승진 직위	최종 심사결과	사유
1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2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3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4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5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6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7	전임교원B						최저요건 미충족	
8	전임교원B						최저요건 미충족	
9	교육중점 전임교원						최저요건 미충족	
10	외국인 전임교원						최저요건 충족	
11	외국인 전임교원						입적 평가(교육 영역) 미충족	

▶ 아래 6명 정년보장(임용일: 2020.09.01.)

연번	직종	성명	소속	현직위 임용일	현직위	승진 직위	최종 심사결과	사유
1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2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3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4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5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6	전임교원A						최저요건 충족	

▶ 아래 2명 재임용 (재임용 계약기간 : 2020.09.01. ~ 2022.08.31.)

연번	소속	성명	직종	현 직위	임용기간		재심의 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1	한국어 문화학부						조정강의평점 기준 충족	

<간서명>	이 복수	이복수	정연승
-------	------	-----	-----

연번	소속	성명	직종	현 직위	임용기간		재심의 결과	사유
					현재	제임용		
2	LINC+ 사업단							학생취업 기준 충족

* 재임용 재심의 사유

: 제399차 교원인사위원회(2020. 6. 16)에서 재임용 심의 결과에 재임용 유예자로 판정된 한국어 문화학부 신유진, LINC+사업단 김미준교수에 대해 2020. 7. 31일까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재심의하기로 함

▶ 아래 9명 면직(면직 임용일: 2020.08.31.)

연번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최초임용일	비고
1	전임교원A						정년 퇴직
2	전임교원A						정년 퇴직
3	전임교원A						정년 퇴직
4	전임교원A						정년 퇴직
5	외국인 전임교원						정년 퇴직
6	산학협력 중점교원						계약 만료
7	교육중점 전임교원						계약 만료
8	교육중점 전임교원						의원 면직
9	교육중점 전임교원						의원 면직

- 3) 정길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와 징계의결서류 등을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아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간서명>	이 복수	한 죄인	정연승
-------	------	------	-----

- ▶ 아래 2명 징계의결요구
- ▣ 징계의결요구 대상자

소속(직종)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재직기간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전임교원B)				
일본어창의융합학부 (교육중점전임교원)				

<간서명>	이복수	정연승
-------	-----	-----

3) 윤효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연승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간서명>	이) 복수	✓) 김재현	정 연승
-------	-------	--------	------

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아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 아래 3건 규정 개정

□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정사유

- | | |
|--|--|
| - 국고 사업을 수행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IPP형)의 재임용 요건을 일반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요건과 분리하여 변경하고자 함. | - 학기 중도에 신규 임용되는 경우의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요건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 | |
|--|
| - [별표6]IPP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사업연차별 재임용 최저기준(전임인사규정 제19조 2항 관련) |
|--|

연 번	성과지표		현행기준					개선(안)				
	지표명(단위)	비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년도 이상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년도 이상
1	IPP 참여 학생	명(이상)	25	25	29	33	36	25	25	29	20	20
2	일학습병행 참여 학생	명(이상)	0	5	6	7	8	0	5	6	6	6
3	중도 탈락 학생	명(이하)	1	1	1	1	1	1	1	1	삭제	
4	IPP 참여 기업	개(이상)	15	16	16	16	17	15	16	16	8	8
5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개(이상)	3	3	4	5	6	3	3	4	3	3

※ 적용 : 2021. 3. 1일자 재임대상자부터 적용함.

- | |
|--|
| - 신규 임용이 학기별로 각각 3월과 9월이 아닌 경우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심사 시, 업적평가의 교육영역과 조정강의평점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임용일이 포함되어 있는 학기의 실적은 제외할 수 있음. |
|--|

□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 | |
|--|---|--------------------------|
| - 강사 신규임용 시 심사위원 범위 확대 및 재임용평가 시 제출양식 보충 | - 강사의 강의 시수 유연성 확보(팀티칭 1시간 또는 2시간 과목의 등에 대한 강의시수 배정 시 적용) | - 강사 재임용평가 시 강의 평가 점수 강화 |
|--|---|--------------------------|

<간서명>	이 복수	김경미	정연승
-------	------	-----	-----

▣ 주요내용

- 강사임용심사위원회에 해당 학부(과) 또는 행정부서의 전임교원이 심사할 수 없을 경우 학부(과)장 또는 행정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유사 전공의 전임교원이 심사 가능
- 재임용 절차에 필요한 서식 제정 : 만료통지서, 만료통지확인서, 재임용 심의 신청서, 재임용 심의 포기확인서, 재임용 거부 통지서,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서
- 강사의 소속은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으로 하고 재임용 시에 변경가능
- 비대면수업 시 교통비 미지급
- 강사의 강의 시간 상한 조정(주당 6시간 초과 불가 → 8시간 이하로 가능)
- 재임용 평가기준 변경
 - 수업계획서 기간 내 배점 20점(1강좌당 - 3점) → 10점(미준수 시 1강좌당 - 3점)
 - 수업일수 준수 40점(보강계획누락 1강좌당 - 5점, 보강미실시 1강좌당 - 20점)
→ 보강계획입력 10점(미준수 1강좌당 - 5점), 보강실시 20점(미준수 1강좌당 - 10점)
 - 수업평가점수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
(강좌별 점수구간별 감정, 1강좌당 3.5미만 - 30, 3.5이상3.7미만-20, 3.7이상4.0미만-10점)
→(조정강의평점 기준 3.5이상 3.7미만 10, 3.7이상 4.0미만 20, 4.0이상 4.5미만 30, 4.5이상 50)

▣ 「직제규정」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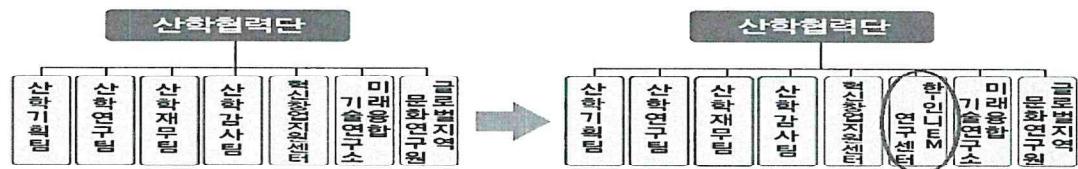
- 20. 2. 1.자 직제개편 관련 상위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검토 및 개정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케이알테크, 특수목적법인(가칭) 등 3개 기관이 합작하여 인도네시아 GESITS 성능개량 및 이를 위한 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협의에 따른 전담 연구센터 설치

▣ 주요내용

○ 상위규정(정관)과의 모순, 저촉에 따른 개정

- 처장, 실장 자격의 단서조항 조교수를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
- 교목실장의 보직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변경
- 부속기관 기관장의 자격에서 책임행정관 이상을 선임행정원 이상으로 변경
- 단과대학 및 대학원 산하 과장의 경우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을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변경

○ 산학협력단 직속 기관으로 한-인니EM 연구센터 설치



- 3) 정길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효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이 복수	이 복수	정연승
-------	------	------	-----

□ 제4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은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2019.08.29.)에서 의결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안)에서 “대학발전방향과 대학혁신사업의 연계성 강화”, “BUFS2025 핵심영역과 과제와의 정합성 확보”, “BSC 4대관점(재무·자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으로 재분류하여 실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BUFS2025(안)을 재정립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안)에 대하여 배부된 별첨 자료(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와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립 방향”, “발전목표 및 전략방향 변경사항”, “50대 혁신과제/영역/부문 변경사항”, “대학의 비전 및 목표(교육목표 및 인재상, 혁신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 대학 발전목표와 3대 세부 목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16개 혁신영역별 추진목표, 50대 혁신과제)”, “대학의 특성화 발전계획(4대 부문별 특성화 전략 도출, BUFS 특성화 전략 체계, 특성화 전략 추진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환류 체계”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다.
-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 예산 편성(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문상호 기획처장이 배부된 별첨 자료(추가경정예산안)를 바탕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아래 회계별 예산 요약

(단위:천원)

구 분	1차 추가경정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등록금회계(A)	51,793,389	49,770,000	2,023,389
비등록금회계(B)	39,632,263	33,410,000	6,222,263
내부거래제거(C)	1,862,678	350,000	1,512,678
교비회계(A+B-C)	89,562,974	82,830,000	6,732,974

<간서명>	이복수	정연승
-------	-----	-----

-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효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은 89,562,974,000원(등록금회계 51,793,389,000원, 비등록금회계 39,632,263,000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문상호 기획처장이 회의실에서 퇴실하다.>

□ 제6호 의안 : 성지고등학교 2020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0학년도 성지고등학교 추경예산 편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지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정효채 행정실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 2) 정효채 행정실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성지고등학교 제1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아래 회계별 예산 요약

(단위:천원)

구 분	1차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액
학교회계	5,209,355	5,188,199	21,156

- 3) 윤수길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길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성지고등학교 학교회계 제1차 추경예산은 5,209,355,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정효채 행정실장이 회의실에서 퇴실하다>

□ 제7호 의안 :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임용 절차를 거쳐 제청된 성지고등학교 교감 보직임용(안), 기간제교원 면직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아래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 교감 보직 임용 (임용일 : 2020.09.01.)

<간서명>	이 복수	신치미	정연승
-------	------	-----	-----

임용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비고
임용					정년 (2022.08.31.)

※ 자격증(중등교감) 수여 조건으로 보직을 임용하고자 함.

※ 현 교감직무대리 기간 (2020.03.01. ~ 2020.08.31.)

▶ 기간제교원 면직 임용 (임용일 : 2020.08.14.)

퇴직구분	직위	성명	과목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의원면직					2020.03.01. ~ 2020.08.13.	

- 3) 윤효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연승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8호 의안 : 법인 정관 개정(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주요내용

[1] 회계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시행 2020.07.30.) 반영 및 예산 확정 절차의 혼선 방지

○ 주요내용

- 대학교 교비 예산 확정 및 예산·결산의 제출·공개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추가
 - [정관 제9조 및 제12조의 2 개정]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 따라 개정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할 수 있는 예외조항 개정
 - [정관 제9조 개정]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 적용
 - ① <현행과 같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② <변경>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2] 임원 교육경험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시행 2020.09.25.) 반영

<간서명>	이복수	정연승
-------	-----	-----

○ 주요내용

- [정관 제25조 개정]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에 따라 교육경험의 세부 적용 기준을 신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위의 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3]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른 조교 대표 참여

○ 주요내용

- [정관 제35조의4 개정] 고등교육법 제1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조교를 포함하여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

[4] 교육부 시정요구에 따른 2020.02.07. 개정된 정관의 부칙 변경

○ 주요내용

- 부칙 (개정 2020.02.07.) 제2항 (경과조치) 삭제
 - 교육부로부터 정관 변경 시행일은 이사회 의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의 문서가 접수됨.
 - 정관 제92조제2항 및 3항 (대학교 하부조직의 변경)의 개정 시행일을 이전 시기로 소급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삭제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p>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u>심의</u>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p> <p><신설> 1호 - 2호</p>	<p>제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하며, 제2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u>심사·의결하고</u> 이사장이 집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학교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간서명〉	이 복수	정연승
-------	------	-----

현 행	변 경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p>	<p>④ 제1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2조의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 ① (생략)</p> <p>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u>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u></p> <p><u><신설> 1호 - 2호</u></p>	<p>제12조의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u>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u></p> <p>1. 대학교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생략)</p> <p>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u>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u></p> <p><u><신설> 1호 - 4호</u></p> <p>④ - ⑦ (생략)</p>	<p>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이나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u></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35조의 4(대학평의원회의 조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u>11명의</u>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5조의 4(대학평의원회의 조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u>12명의</u>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간서명></u>	<u>이 복 수</u>	<u>스케일</u>	<u>정연승</u>
--------------------	--------------	------------	------------

현 행	변 경
<p>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u><신설></u>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개정 2020. 2. 7.)</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10호, 2019.04.16)을 따른다.</p> <p>② (경과조치) 제9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대학교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2020 년 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p>	<p>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조교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개정 2020. 2. 7.)</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10호, 2019.04.16)을 따른다.</p>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개정 2020.08.25.)</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874호, 2020.01.29) 제1조를, 제25조 제3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078호, 2020.03.24) 제1조를 따른다.</p> <p>② (경과조치) 제25조 제3항의 이사회와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사립학교법 부칙 (법률 제17078호, 2020.03.24.) 제3조에 따른 다.</p>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길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기타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회의록의 대표 간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
하다.
- 2) 윤수길 이사는 이사장 직무대행, 윤효선 이사, 그리고 정연승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3) 아울러 회의록 공개 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공공기관의

<u><간서명></u>	<u>이 복수</u>	<u>신재민</u>	정 연승
--------------------	-------------	------------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및 법인 주요 경영에 관련되는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정길수 이사 동의와 오지섭 이사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7. 폐회선언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15시 50분에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식이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20년 8월 25일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이 복 수 이복수
이 사 정 길 수 정길수
이 사 오 지 섭 오지섭
이 사 윤 효 선 윤효선
이 사 윤 수 길 윤수길
이 사 김 요 한 김요한
이 사 정 연 승 정연승